

기타(G-1)

활동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A-1) 내지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활동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p>1.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관광(C-3-3) 단수사증 발급</p> <p>가. 발급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p>※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간병인 동반입국 허용</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내외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③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관련 예약 입증자료 징구 ④ 치료비·체재비 등 부담능력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p>※ 입증서류는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p>※ 재외공관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p>
▣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외국인환자(C-3-3, G-1-10)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가. 신청대상

신청자	■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 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 가족* 및 간병인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직계가족
초청자	■ 「의료법」 상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나. 신청방법

- 외국인 환자(가족) 초청은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대한민국 비자포털)신청을 통해서만 허용 ('12. 1. 1.부 시행)

다. 신청기관

- 초청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 ③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유치 기관이 피초청인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 제출생략. 단, 유치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 피초청자 중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능력 입증서류 등 징구 가능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생략
- ⑤ 동반가족 입증서류 및 간병인 입증서류

【동반가족 입증 서류】

- (인정서류) 본국 또는 국내 소재 본국대사관에서 발행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 ※ 단, 송출국가 국적의 환자와 동반하는 가족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도 송출국가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 가능
-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 목차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참고사항	<p>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전담직원 등록</p> <p style="text-align: center;"><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p> <p>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p>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p>③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18.></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시행일 : 2021. 1. 1.]</p>
	<p>가. 용어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치업자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초청 또는 진료 실적이 우수하고 불법체류율이 낮은 의료관광 유치기관 ■ 외국인 환자 :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 목차	
참고사항	

- 외국인 초청업무 전담직원(이하 ‘전담직원’) :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직원으로서 외국인 환자 초청업무 및 체류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되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 동반가족 :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 * 다만, 국내 병원과 송출국가간 환자송출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국가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환자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가족까지 동반가족 범위 확대
- 간병인* : 외국인환자를 간호하고 돌보는 일을 담당하는 동반가족이 아닌 제3자 외국인
 - * 다만, 동 지침에서는 환자송출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환자를 간호하는 간병인에게만 의료사증 발급

나. 등록 대상 및 자격

■ 등록대상

-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이하 ‘유치기관’)로 등록을 마친 자
 - ※ 유치기관 등록 시, ‘전담직원’도 함께 등록

■ 등록자격

- 신청일 기준 유치기관이 등록취소 및 재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법인 또는 대표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불가
- 전담직원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아야 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 등록 신청 및 심사 절차

■ 신청기관 : 유치기관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 등록방법

- 비자포털(www.visa.go.kr)에 접속, 유치기관 기업개요 및 전담직원



목차

	<p>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제출서류를 전자파일(스캔)로 등재·신청</p> <p style="text-align: center;">【 대한민국 비자포털 회원가입 절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포함된 기업회원 가입 메뉴를 선택 ② 회원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고유식별정보 수집 등에 동의 ③ 사업자등록정보*, 기업정보, 담당자 정보 등을 입력 <p>* 비자포털 ID 및 비밀번호, 사업장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정보</p> ④ 사업자등록증, 유치기관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 제출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업로드 <p>■ 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전담직원으로 근무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및 유치기관 대표의 위임장* <p>* '출입국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 신청서'로 갈음</p> <p>라. 회원가입 등록 후 정보변경 절차</p> <p>■ 유치기관 휴·폐업, 대표자·전담직원 변경 시, 15일 이내에 비자포털에서 유치기관 회원정보(사업자/담당자 변경)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대표자·전담 직원 변경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전까지 변경 등록 필요 <p>■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전담직원, 사업장명 등을 변경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의료관광 유치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변경 승인</p>
의료관광 유치기관 행정제재 기준	<p>1. 회원자격 정지 및 취소, 회원 재가입 제한</p> <p>가. 일반적 행정제재</p>

제재종류 내용	1월 정지	3월 정지	회원자격 취소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부과 시	10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01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501 만원 이상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고발된 경우
고액의 부당한 수수료 요구	최초 적발	-	2회 적발
	통상의 거래 수수료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누설	최초 적발	-	2회 적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제재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	중대한 경우	중대한 업무지시 위반	사증발급을 허가할 수 없을 정도로 위반사실이 중대한 경우
	경미한 경우	반복적으로 위반	정지처분 후 3월 이내 반복 위반
허위서류 제출	과실	-	고의적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경우(범칙금 부과와 상관없음)		
유치기관 등록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한 경우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정도에 따라 사무소장이 판단	사회적 파장이 커서 유치기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나. 회원 재가입 제한

- 회원자격이 취소된 유치기관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가입 제한
- ※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였으나 유치기관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발급일부터 회원자격 다시 부여

다. 회원자격의 취소의 면제

- 취소사유가 있는 유치기관 중, 기관의 소명 내용, 소재불명 발생 건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부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 취소 면제

라. (제재시기) 사유 발생일

2. 불법체류자 발생에 따른 초청자의 행정제재

가. (근거)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7호

나. 불법체류율 산식 (단위 : %, 소수점 이하 반올림)

신청일(또는 제재일) 기준 최근 6개월간 불법체류 발생 인원

신청일(또는 제재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입국한 입원

X 100

【불법체류자 발생에 따른 행정제재 기준】

제재종류 입국인원	서면경고	1월 정지	3월 정지	회원자격 취소
1명 ~ 10명	총 1명 발생	총 2명 발생	총 3명 발생	총 4명 이상 발생
11명 ~ 20명	총 2명 발생	총 3명 발생	총 4명 발생	총 5명 이상 발생
21명 이상	불법체류율 5%~15%	불법체류율 16%~20%	불법체류율 21%~30%	불법체류율 31%이상

※ 총 발생인원은 신청일(신청이 없는 경우 제재일) 기준 최근 6개월간 발생한 인원을 말함

※ (최근 3개월 이내 행정제재가 있는 경우) 최근 행정제재 이후의 최근 6개월간 입국인원과 불법체류자 비율로 산정하되, 행정제재 이전의 입국 및 불법체류인원은 미포함

- 단, 행정제재 이후 3개월 이내 1명 이상 불법체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이 산정한 제재종류보다 1단계 상향